

2021년 겨울

## 기사 목록:

---

- 제품포장 및 자원재활용 관련 주요 규제 변화
- 환경 및 화학물질 규제 완화 추진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제품포장 및 자원재활용 관련 주요 규제 변화

정부는 폐기물의 증가를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되던 품목에 대한 재활용 대상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2021. 7.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상 플라스틱 폐기물 중 회수·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그간 자발적 협약(제12조제2항제2호) 대상이었던 17종의 품목을 새로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이하 "EPR")(제16조)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이란,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17종 중에서 이미 재활용 여건이 성숙하였다고 보는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2022년 1월)부터, 그리고 나머지 13품목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2023년 1월)부터 EPR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EPR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7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도 EPR 적용(4개 품목)	2023년도 EPR 적용(13개 품목)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품목들에 대한 세부 설명은 [별지] 참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 비용의 경우, 327원/kg(생활용품)부터 685원/kg(전력·통신선)까지 분포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재활용법상 EPR 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되었습니다.

\* 자원재활용법에 대한 특별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 패널 등)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관리되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을 중간단계인 자발적 협약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EPR로 전환해온 기존 정부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동 개정안은 조만간 확정되어 공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별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

제 품	세부 내용
1. 안전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각종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2. 어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양식어업 및 어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3. 로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4. 산업용 필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 필름 및 비닐·랩
5. 영농필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시설원예와 잡초 억제(멀칭(mulching))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농업용 필름
6. 폴리에틸렌(PE)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폴리에틸렌(PE) 재질(가교화폴리에틸렌(XLPE) 재질을 제외한다)의 모든 관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PE)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을 포함한다)
7. 인조잔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잔디의 형태, 용도, 기능적 특성을 갖춘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잔디류 제품

<p><b>8. 생활용품</b></p>	<p>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소비재 중 다음 각 목의 제품</p> <p>가. 주방용품(‘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의 기구, 제5호의 용기·포장 및 이들 기구와 용기·포장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밀폐·보관 용기(공기, 대접, 접시, 식판, 반찬통, 쌀통을 포함한다)</li> <li>2) 물병·물통</li> <li>3)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li> <li>4) 양념통</li> <li>5) 도마</li> <li>6) 도시락 용기</li> <li>7) 수저통</li> <li>8) 식기 건조대</li> </ol> <p>나. 위생용품(목욕, 세탁, 청소, 이·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누통·비누 받침</li> <li>2) 칫솔꽂이</li> <li>3) 바가지</li> <li>4) 목욕 의자</li> <li>5) 휴지통</li> <li>6) 쓰레받기</li> <li>7) 빨래판</li> <li>8) 빨래 바구니</li> </ol> <p>다. 기타용품(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li> <li>2) 옷걸이</li> <li>3) 바구니</li> <li>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li> </ol>
<p><b>9. 파렛트(pallet)</b></p>	<p>물품의 집하, 겹쌓기, 보관, 하역,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한데 모아서 쌓을 수 있도록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p>
<p><b>10. 플라스틱 운반상자</b></p>	<p>물품의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 (단프라 박스는 제외한다)</p>

<p><b>11. 프로파일(profile)</b></p>	<p>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창틀 또는 문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b>12. 폴리염화비닐(PVC)관</b></p>	<p>폴리염화비닐(PVC)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모든 관류 제품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시트·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 등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시트·평판</p>
<p><b>13. 바닥재</b></p>	<p>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마감재</p>
<p><b>14. 건축용 단열재</b></p>	<p>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해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를 발포·성형한 제품</p>
<p><b>15. 전력·통신선</b></p>	<p>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 또는 피복</p>
<p><b>16. 교체용 정수기 필터</b></p>	<p>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교체용 정수기(淨水器)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에 한정한다)</p>
<p><b>17.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b></p>	<p>‘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유지관리(A/S)를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부품  가. 범퍼  나. 몰딩(가니쉬를 포함한다)  다. 언더커버  라. 워셔탱크  마. 냉각수탱크</p>

## 환경 및 화학물질 규제 완화 추진

최근 정부는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건의된 규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 및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시 수입량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물질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2)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조정하여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수입자와 동일한 유예기간을 적용받도록 하며, (3) 석유화학 저장시설의 형태 및 보관물질을 고려하여 총탄화수소 배출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2021. 10. 27.자 국무조정실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각각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 완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연간 0.1톤 이상은 등록, 0.1톤 미만은 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기준이 과도하다는 요청에 따라 정부는 (1) 연간 0.1톤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환경 유해성 우려가 낮은 물질은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하며(2종 면제), (2) R&D 목적의 경우 연간 0.1톤 이하 수입 시 상세 성분정보 자료 제출을 면제(단, MSDS 첨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위 내용을 반영한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은 2022. 4. 내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추후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MSDS 제출기간 합리화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2021. 1. 16.부터 시행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MSDS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 개정일 이전부터 구 산안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한 자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1년부터 5년 사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특정 원료를 제조·수입하여 중간제품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상황에서 특정 원료의 제조·수입량보다 중간제품의 제조량이 많은 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유예기간보다 중간제품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간제품의 제조자가 MSDS 제출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하여는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최대 유예기간인 2026. 1. 16.까지로 하되, 다만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MSDS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중간제품의 제조량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영되어 2021. 8. 19.자로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해당 산안법 시행규칙안의 시행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 안부칙 제3조 참조).

###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 배출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요청에 따라, 정부는 석유화학 저장시설의 형태·보관물질을 고려하여 배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완화하고, 이를 2021. 10. 14.자로 개정·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은 200ppm 이하이나, 이 중 방지시설에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을 연결하여 탄화수소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에는 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비고 제11호 참조).
  -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5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나, 해당 시설이 2019. 7. 16. 이전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 저장된 물질의 위해도에 따라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시설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7)~(8) 참조).
- 아울러, 정부는 2022. 6. 까지 폴리올레핀계 물질에 대한 합리적 배출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2021. 11.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위 시행령 제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9. 24.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크게 (1)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3)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에 관한 각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에 관한 주요 사항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설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2050 탄소중립(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21. 10. 27. 국무회의에서 위와 동일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결하였는바, 시행령 제정안은 이를 분명히 명시한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매년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별표2]):**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가계획(행정기관의 장) 및 개발사업(사업자)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의미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항만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야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각 분야에 따라 2022. 9. 25. 또는 2023. 9. 25.부터 시행

- **온실가스 배출 정부 관리대상인 업체 기준 설정(제28조):** (1) 해당 연도 1. 1.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이상인 업체, (2) 해당 연도 1. 1.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

톤(tCO<sub>2</sub>-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업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 감축사업의 방법 및 절차(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국제감축사업이란 파리협약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해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을 의미합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1) 국무조정실에 감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이 해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제 감축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사전 승인하고, (2) 사업수행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부문별관장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제 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검증, 실적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했습니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

- **고용상태 영향조사(제72조):** 시행령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상태의 영향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제73조):**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 -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 등)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적합성 인증 등(제82조부터 제84조):** 시행령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지원 사업, 녹색기술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제92조부터 제100조):** 시행령 제정안은 한국은행에의 기금계정 설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사업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방향은 향후에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 기초가 될 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대통

령령)은 2021. 12. 22.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